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471 제출연월일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1.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
- 2.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
- 3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경우

제32조제1항제5호 중 "장해가 해소된"을 "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"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 단서 중 "저하된"을 "낮아진"으로 한다.

제53조 중 "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"를 "기간에서 제외한다"

로 한다.

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(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청 체	게 져 아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	제13조(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
시기) ①・② (생 략)	시기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
	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	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
	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
	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
	것으로 본다.
	1.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
	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
	음 날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
	<u>경우</u>
	2.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
	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
	<u>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</u>
	원으로 임용된 경우
	3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	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
	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
	그 다음 날 다시 사립학교교
	직원으로 임용된 경우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32조(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	제32조(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

실 및 이전)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<u>장해가 해소된</u> 경우

② (생략)

- 제39조(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 ⁷ 한) ① (생 략)
 -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, 그 회복을 방해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실 및 이선) (I)				
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5				
<u>장해 정도가 상</u>				
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				
<u>된</u>				
② (현행과 같음)				
제39조(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				
한) ① (현행과 같음)				
2				
<u>낮아진</u>				
•				

③ (생략)

제53조(효력발생기간)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(日數)는 그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
제55조(신고사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 지 사유

2. ~ 4.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53조(효력발생기간)
<u>기간에서 제외한다</u> .
제55조(신고사항)
1.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
지 사유(제13조제3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

2. ~ 4. (현행과 같음)